

제2026-1099호

행정대집행 고 고 서

박영현 귀하

주소 : 대전시 대덕구 오정로89번길 16-14

대전조차장역 구내 비탈사면 상부에 위치한 해당 무단건축물[토지(국유재산):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0-78]은 노후화되어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서, 철도시설 및 열차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현재 소유자인 귀하께서는 해당 건축물이 무단시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자인 김선하 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(25.1.1)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, 우리공단에서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귀하에게 26.9.4.까지 해당 무단시설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으나,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철도 안전운행 및 국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,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, **2026년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라** 고 고 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**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※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용도	면적	대집행 방법
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-78번지	국유재산 내 무단 시설물 (모든 지장물 및 물건)	판매점	75㎡	인력, 장비,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철거대상 물건 일체를 철거 (국가철도공단 또는 제3자 집행)

2026. 10. 6.

국가철도공단 이사장

